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3월 6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예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전문화, 복잡화, 다양화 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, 오산시의회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의2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3월 13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전문가의 활용 등)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“전문가”라 한다)에게 자문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·조사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활용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전문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